

#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760

제출년월일 : 2002. 4. 6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  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
  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 개선(연가수혜범위 확대)

## 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
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(아래산출방식)토록 함  
(안 제20조제2항)  
$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휴직기간}(\text{월})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
## 3.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(행정자치부 운영12100-274)

## 4. 본문

-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“(토요일전일근무제)”를“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”로 한다

제16조의2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

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 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휴직기간}(\text{월})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

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16조의2(토요일전일근무제)①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p>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br/>①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〈신설〉</p> | <p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①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p>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br/>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 <p>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6일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</p> <p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</p> 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휴직기간}(\text{월})}{12(\text{월})}$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× 당해년도 연가일수</p>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</p> <p>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제공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22조(공가)①<br/> <u>5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</p> | <p>③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제22조(공가) ①(현행과 같음)<br/> <u>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부 칙〉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